

[공통][국제교류팀] 2023학년도 1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1. 대상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22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학석사 연계,교환, 7+1파견,자비유학,아너스 프로그램

나. 방·휴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다. 2023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예정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고,확산 추이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2023학년도 2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추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계 방학 중 연수도 해당 국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라며,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현지 연수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2023. 3. 2.(목) ~ 3. 24.(금) 15:00까지

※ 학과 사무실 방문 시 사전 연락 후 방문을 권장하며, 마스크 필수 착용 요망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출국 전)

※대상자: 2023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프로그램 선발자(복수학위,학석사연계,교환, 7+1 파견,자비유학,아너스)

1) 서약서 제출(미제출자만 해당)

가)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내역]에서 우측'서약서제출'링크 클릭

※[교류내역]에서 본인의 파견대학교 이름이 입력되어있지 않거나, 지원대학교가 변경된 경우 studyabroad@hufs.ac.kr을 통해 입력/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번,해외대학 Full name기재요망)

나) 참가자가 확인 사항 모두 숙지 후 각 항의'확인'버튼 클릭하고'서약서 제출'클릭하여 제출

2)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사항 확인

가) 학과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는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에서 국외교류수강 교과목의 학점 인정 및 전공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 불가 사항은학과 사무실로 문의 요망

나) 여러 영역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아래 해당하는 각각의 승인 학과의 내규모두 확인 필요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소속1전공 학과(부)장

다) 관련 사항 미확인으로 귀국 후 학점 인정 관련 문제 발생 시 학과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니, 반드시 출국 전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제출(7+1파견학생,자비유학생,아너스에 한함)

가)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스캔하여PDF파일로 준비

나) studyabroad@hufs.ac.kr 메일로 위 첨부파일을 발송

발송 시 제목은 '2023-2학기/프로그램/학번/이름/파견대학교명'으로보낼 것

ex) 2023-2학기/ 7+1파견학생/ 202101234/홍길동/만하임대학교

※ 입학허가서 발급이 늦거나 발급되지 않는 경우, '000학생이 000대학에서 00기간동안 공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외국대학 공식서류, 외국대학 등록확인증, 외국대학 등록금 납부내역, e티켓, 혹은 외국대학 담당자와의 Email교신 내역 중 하나로 먼저 대신 제출하고, 입학허가서가 정식 제출되는 경우에 추후 다시 제출 요망

※ 입학허가서 미제출 학생은 7+1파견학생 장학금 수혜, 해당 학기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교환학생 및 '영어권' 7+1파견학생(국제교류팀 통해 준비한 선발자)은 별도 제출하지 않음

나. 정규학기 프로그램(귀국 후)

※ 대상자: 2022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가)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이수과목 입력'버튼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공란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요망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타이핑 입력 후 출력할 것)

※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1) 학점인정요청서(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4) 귀국보고서 출력본(자비유학생 제외)

※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ex: ABC)부여 기준에 대한 설명)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미네르바교양대학장

- 자선: 소속 1전공 학과(부)장

다)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

- 제출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출국 전, 23-1 방학동안 참여 희망자는 5월 말 재공지)

- 대상자: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신청 희망자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가) 해외연수(어학당):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계획서 작성 후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정규과정):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6개 국가에 한함)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으며,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3) 계획서 제출: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귀국 후)

-대상자: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 해외연수: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출력 후작성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가) 해외연수

-비영어권 국가: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요함

-영어권 국가(아래6개 국가에 한함) :학과장 승인 요하지 않음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제출

※ 반드시ABC와 같은 성적(혹은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수업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별도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을 확인할 것(6,12월 서류 제출)

4. 국외교류프로그램 유의사항

- 인정신청서 한 장에 1전공,이중,교양,자선 모두 기재하여 해당학과(부)장별 승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

- 수학대학성적표는 국제교류팀의 확인을 받아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 수학 완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대 1년 이내 신청해야함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 대학이나 외국대학에서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 파견/자비유학/아너스/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학·석사연계과정/교환/7+1 파견/아너스/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 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따르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학생(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단,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양식]참고 단,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 취득한 총 교류학점이 최대 인정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2015학년도 1학기부터 해외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은(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 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하며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점을 취사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취득한 총 교류학점이 최대 인정가능학점을 초과한 경우엔 소속 학과 및 국제교류팀에 문의
요망

-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본교에 수강신청
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F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1개 학기 최소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최소 이수학점
(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7+1파견학생은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교양,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
수할수 없습니다.

-외국대학 수학 학기 종료 후 반드시1개 학기 이내에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
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학·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대학 수학 학기
가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단,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
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즉시 귀국해야 하
며,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해당 학기 장학금
을 수혜받은 경우 귀국 후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
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2

국제교류처장